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15.(화) 16:00
(지면) 2026. 9. 16.(수) 조간

대통령기록 생산부터 디지털 보존까지 한-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관리 협력 확대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와 업무협약(MOU) 체결
-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제도 우수 사례 공유 등 교류 활성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관장 한성원)은 9월 15일(화) 대통령기록관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알리야 무스타피나(Aliya Mustafina) 소장)와 양국 대통령기록관리 분야 협력 증진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전자기록 관리 등 다각적 협력 확대

이번 업무협약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2026.9.16.~9.17.)’를 계기로 추진된 기록관리 분야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한국의 선진 디지털·전자기록 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 전문 분야의 실질적 교류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각국의 법령 틀 내에서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지식·기술·정보 교류와 공동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 정책, 제도 우수 사례 공유, ▲양국 역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의 디지털 사본 교환, ▲디지털 콘텐츠 및 전자기록의 생산·저장·장기 보존·보호 기술과 경험 교환, ▲상호 합의한 주제에 관한 공동 연구 수행, 전시, 학술회의, 세미나 개최 등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중앙아시아의 핵심 거점국인 카자흐스탄과의 기록문화 교류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터 전자기록의 보존,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 교류와 최신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대통령기록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안대희 (044-211-2251)
		담당자	연구관	안지현 (044-211-2265)



대한민국 대통령기록관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기록보존소간의 기록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대통령기록관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기록보존소(이하 “협약당사자”라 함)는 기록관리 분야의 협력 증진과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협약당사자 간 기록관리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식·기술과 정보 교류 및 공동 활동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국 국내 법령의 틀 내에서 이행한다.

제2조 협력 분야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1. 대통령기록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 교류
2. 양국 역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의 디지털 사본 및 메타데이터 교환
3. 대통령기록 보존·복원 기술 및 관리 기법,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기록의 생산·아카이빙·장기보존 및 보호 분야에서의 경험, 기술 및 우수사례 공유
4. 협약 당사자가 합의한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 전시 수행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출판물 제작
5. 대통령기록관리 분야의 지식 및 경험 교류(학술회의, 세미나 등 역량강화 활동)
6. 기타 협약 당사자가 서면 합의한 협력사업

제3조 협력방식

협력은 공동연구, 워크숍, 회의, 방문 및 온라인 교류 등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세부 협력사업은 별도 합의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재정

협력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당사자 자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에 따라 별도 합의할 수 있다.

필요시 협약당사자는 서면 합의를 통해 제3자로부터 이 업무협약에 따른 협약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모색할 수 있다.

제5조 정보 및 자료의 이용

협력 과정에서 교환되는 정보 및 자료는 상호 합의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협약당사자는 본 업무협약의 이행을 위해 교환된 “비밀”로 표시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고 무단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대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 지식재산권

협약당사자는 각국의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상호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본 업무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당사자가 제공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협약당사자에게 귀속된다.

본 업무협약의 이행 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사용은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본 조항은 이 업무협약이 만료된 후에도 유효하다.

제7조 분쟁의 해결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존중과 이해의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 및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본 양해각서는 국제법상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정식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8조 효력 및 기간

본 양해각서는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만료 6개월 전 어느 일방이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제9조 개정 및 종료

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서면 합의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은 합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어느 일방은 상대 기관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본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본 양해각서의 만료 또는 종료 시에도 진행 중인 사업은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

본 양해각서는 2026년 9월 15일 세종에서 카자흐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 서명되었으며 각 당사자는 원본 1부를 보관한다. 각 문서는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대통령기록관을 대표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기록보존소를 대표하여